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부실기업 퇴출제도 개선)
- 나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(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)
- 다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준 및 절차 정비)
- 라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투자경고 지정 및 지정예고 대상 확대)
- 마.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(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정비)
- 바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(가격변동성 측정 방식 및 거래증거금을 산정 방식 변경)
- 사.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(전문평가 절차 명확화 및 평가기관의 법령 위반 책임 부여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2026/5/13 개정 · 2026/7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'부실기업 신속·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'(2026.2.12., 관계기관 합동) 관련 조치로서 부실기업 퇴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(부칙 제4조, 제48조 제1항 제9호)
 - 상향조정 계획을 매년에서 매반기로 조기화하고, 일시적인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도록 세부 산정기준 개정
 - (기존) 관리종목(30거래일 연속 기준 하회) 지정 후 90일 동안 '연속 10일'+(누적 30일) 기준 상회시 상장폐지되지 않고 복귀
 - (개정)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'연속 45일'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[시가총액 요건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]

	2026년 1월	2026년 7월	2027년 1월	2028년 1월
기존 계획	200억원	-	200 → 300억원	300 → 500억원
조기화	-	200 → 300억원	300 → 500억원	-

-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(제47조 제1항 제9호의2, 제48조 제1항 제9호의2)
 - 보통주식의 증가 1,000원 미만을 관리종목 지정 및 형식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
 - 요건 충족 방식은 시가총액 미달 기준과 동일(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→ 이후 90일 이내에 '연속 45일'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)
 - 30일 연속 증가 1,000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완료한 경우로서, 해당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가 있었던 경우 상장폐지
 - 30일 연속 증가 1,000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1회 이상의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완료한 경우로서, 해당 주식병합 또는 감자의 총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상장폐지

- 자본전액잠식·공시위반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강화(제48조 제2항 제1호의2, 제48조 제2항 제4호)
 - 최근 반기 말 기준 자본금 전액이 잠식상태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신설
 - 공시의무 위반시 관리종목 지정 없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
 - 공시의무 위반 실질심사 기준을 누계별점을 최근 1년간 15점 이상에서 10점 이상으로 하향
 -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벌점과 관계없이 실질심사

3) 관련 규정 개정

-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(2026/5/13 개정 · 2026/7/1 시행)
 - 부칙 제2조 제1항, 제54조 제1항 제12호
 - 제53조 제1항 제5호의2, 제54조 제1항 제13호
 - 제56조 제1항 제12호 · 제17호의2

나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(2026/5/15 개정 · 2026/5/1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시장 간 일관성 제고를 위해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을 강화하고,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및 절차 정비 등 퇴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(제28조, 제30조, 제30조의2)
 - 타 시장과 동일하게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후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(사업보고서 미제출 포함)시 이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즉시 상장폐지
 - 예외적으로,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·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상장폐지를 최대 1년 유예
 - 회생·워크아웃 계획 최종 승인
 -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에 따른 감사의견 미달일 것(회계부정, 감사증거확보 어려움 등 제외)
 - 회생·워크아웃 종료 후 감사의견 변경이 가능하다는 감사인 의견서 제출
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준 및 절차 정비(제28조, 제29조, 제30조의3)
 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시점을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점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 회생절차가 지속될 수 없는 시점으로 변경 등

다.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6/5/15 개정 · 2026/5/1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시장 간 일관성 제고를 위해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,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정비 등 퇴출제도 개선에 따른 세부 절차 정비를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 관련 절차 정비(제27조, 제27조의2, 제29조)
 -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에 대한 상장폐지 유예 제도 관련 감사인 의견서 서식 마련

— 2년 차 감사보고서 제출시에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관련 조항이 적용되도록 정비

□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준 및 절차 정비(제23조, 제24조, 제25조)

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시점 변경 등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등 관련 조문 정비

라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6/5/26 개정 · 2026/5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투자경고 지정 및 지정예고 대상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낮은 대형주를 제외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투자경고 지정예고 · 지정 관련 제외 대상 확대 및 조문 정비(제3조의3 제2항 제8호, 제4항 제3호, 제4호)

-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중 전일의 시가총액의 순위가 상위 100위 이내인 종목 제외
- 그 밖에 시장상황의 급변,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및 지정예고가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종목도 제외
- 기존 초창기 불건전 유형의 투자경고 지정예고 · 지정대상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을 제외하는 조항은 신설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

마.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(2026/5/15 개정 · 2026/5/18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정비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 정비(별표 2)

- 모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대하여 종합적 심사 진행
 - 공시위반행위의 중요성·악의·상습성 여부
 -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
 - 상장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 등

바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(2026/5/19 개정·2026/5/26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최근의 시장 변동성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변동성 측정 방식 및 거래증거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지수가중이동평균법으로 측정한 가격변동성의 충격소멸계수(λ) 변경(별표 1)
 - (기존) λ : 충격소멸계수. 이 경우 충격소멸계수는 0.94로 하되,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
 - (개정) λ : 충격소멸계수. 이 경우 충격소멸계수는 0.97
- 지수가중이동평균법으로 측정한 가격변동성을 기반으로 한 기본거래증거금 산정 방식으로 변경(별표 3 제1호)
 - (기존) ‘기본거래증거금’은 산출대상 종목 또는 관련 지수별로 [별표1]에 따라 산출한 가격변동성의 직전 20매매거래일 평균치에 t-분포(자유도 250, 신뢰수준 99.7%)를 적용한 값과 해당 값에 경기순응성 완화비율을 곱한 값을 합산한 값
 - (개정) ‘기본거래증거금’은 산출대상 종목 또는 관련 지수별로 [별표1]에 따라 산출한 가격변동성에 t-분포(자유도 250, 신뢰수준 99.7%)를 적용한 값과 해당 값에 경기순응성 완화비율을 곱한 값을 합산한 값

사.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(2026/5/19 개정·2026/5/1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경쟁기업 및 개인을 사전 기피신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, 전문평가 절차를 명확화하며 평가기관의 법령 위반 책임 부여 등을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전문평가 절차 명확화(제5조)
 - 전문평가 신청방법과 거래소의 전문평가기관 지정 내용 명확화
 - 신청서 접수일을 평가 시작일로 개정하여 평가 시작 전 평가인력 이력사항 제출하도록 함

□ 기술평가신청서 서식 개정(별지 1호)

- 신청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기업 및 개인을 작성하도록 추가
- 전문평가기관과의 이해관계 현황표 작성 시 일정 포함하도록 개정

□ 평가인력 현황표 서식 개정(별지 3호)

- 전공(연구분야), 학위·자격증을 전공(최종학위), 연구분야·평가분야, 학위, 자격증으로 세분화

□ 평가기관 서약서 서식 개정(별지 4호)

- 서약서 내용 및 법령 위반시 평가기관의 민·형사상 책임 내용 추가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